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 세무담당부서(장)

제 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통령령 제30805호(2020.06.30.)로 일부 개정·공포된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의 일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 「법령 제·개정 자료실」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령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개정이유

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”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말까지 3.5%로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

□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변동

구 분	일 물	시 행
법 령	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4	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
기 간	2020.03.01. ~ 2020.06.30.	2020.07.01. ~ 2020.12.31.
감면세율(액)	개별소비세액(5%)의 100분의 70을 감면	5% → 3.5% (30%↓)
감면한도	100만원 이내	없음

* 이 영 시행 이후(2020.07.01.)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※ 붙임 :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(발췌)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: 회원사 전체

주임	부장	실장	상무	이사장
담당자 박종우	김진석	박상광	성정현	최장순

시행 서자대조20-670 (2020.06.30) 접수 - ()
우 0670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(방배동, 프린스효령빌딩 2층) / www.scra.or.kr
전화 (02) 525-9082 전송 (02) 525-9063 / scra@scra.or.kr / 공개

[붙임]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발췌)

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(제2조의2 제1항 제6호)

○ 개정이유 :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”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.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

○ 주요내용 : 자동차세 개별소비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% → 3.5%로 현행보다 30% 인하 적용

※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<신·구 대비표>

종 전	개 정 후
제2조의2[탄력세율]	제2조의2[탄력세율]
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6.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: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</u>	<u>6.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: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※ 대통령령 제30805호(2020.6.30.)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

-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)

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